20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2차) 사업 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기부자	관련 페이지
1. KOSAF기부펀드 일상회복	2p
2. KOSAF기부펀드 지역 1차 산업	6p

1. KOSAF기부펀드 일상회복

1. 추진 목적

□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복귀를 위한 대학생만의 지원체계는 부족한바 일상회복 유지를 위한 지원을 통해 학업 포기 및 은둔·고립 재발 방지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0백만 원

(단위: 명, 백만 원,)

지원 인원(A)	지원 금액*(B)	지원 기간(C)	지원 규모(D) (AXBXC=D)
10	2	1개 학기	20

*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생활비 장학금)**

□ **지원학교**: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아래 ① ~ ②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교 재학생

※ 신·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 1개 학기 이상인 자

② 2023년* 이후(프로그램 수료일 기준)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 프로그램 수료일 기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프로그램 수료자 신청가능

※ 프로그램 인정 기준: **제출한 증빙 서류상 참여한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용에 '고립·은둔 지원'** 관련 목적 및 활동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단순 취미·문화 등 고립·은둔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외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붙임2.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 참조

※ 심사 기준일 기준 '26년 2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된 자(심사 기준일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10구간으로 간주)

※ **'2026년 푸른등대 2학기 기부장학금'과 본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2026년 푸른등대 2학기 기부장학금 합격자는 **심사단계에서 자동 탈락 처리됨**

□ **동점자 처리기준**: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자 > 연소자

□ **제출 서류(필수 제출)**

○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 참여 또는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권고) [붙임1]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예외) 고립·은둔 지원프로그램(사업) 수료증 등

※ [붙임1.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아래 5가지 필수 정보*가 모두 포함된 수료증 등 서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1. 참여 사업명, 2. 신청자 성명, 3. 참여 기간, 4. 주요 활동 내용(고립·은둔 내용 지원 내용 포함), 5. 발급 기관명(기관장 직인 포함)

□ 기타사항

○ 한국장학재단 AI 상담 시스템 및 전문 상담사를 연계한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컨설팅) 무료 제공

※ 상담 일정, 참여 방법 및 세부 지원 내용은 선발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본 사업의 운영 기준은 '20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함

□ 비고: 상기 명시된 기준 이외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의사에 따름

붙임 1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제20 - 호)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 확 인 서

장학금 신청자 인 적 사 항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000000-0*******
	학 교 명	*ㅇㅇ대학교*	전 공	*ㅇㅇ학과*
프로그램 운영 내역	프로그램명	*ㅇㅇ프로그램*	참여(운영)기간	*202x년 ㅇ월 ㅇ일 ~ 202x년 ㅇ월 ㅇ일*
	주요 활동 내역	*· 고립·은둔 심리 지원*		
	이수 여부	*[] 수료, [] 이수, [] 참여 완료*		

위 학생은 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자 소속: ㅇㅇ기관 ㅇㅇ부
☐ 확인자 성명: (서명)
☐ 연락처:

ㅇㅇ기관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붙임 2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 · 성적 배점표**

1. 가계소득 평가 배점표

학자금 지원 구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배 점	70	67.9	65.8	63.7	61.6	59.5	57.4	55.3	53.2	51.1	49

2. 성적 배점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 30%

[가계소득 및 성적 점수 산출 예시]

①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90점인 경우**

1)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계소득 환산 점수 63.7**점** + 성적 환산 점수 27**점**(90점 × 30%) = **90.7점**

2. KOSAF기부펀드 지역 1차 산업

1. 추진 목적

□ 첨단 산업 위주의 지원 편중으로 점차 소멸해가는 1차 산업 분야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정착형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

※ 1차 산업 지원강화 → 청년 정착유도 → 지방소멸 방지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0백만 원

(단위: 명, 백만 원,)

지원 인원(A)	지원 금액*(B)	지원 기간(C)	지원 규모(D) (AXBXC=D)
25	2	1개 학기	50

*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생활비 장학금)**

□ **지원학교**: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아래 ① ~ 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적 및 지방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지역 구분: 본인 소속된 학교(본교 또는 캠퍼스) 소재지 기준 적용

※ 서울·인천·경기도 소재 대학생은 신청 불가

※ 신·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 1개 학기 이상인 자

② 농업, 수산업, 축산업, 산림업 관련 학과 전공자

※ 관련 학과 인정 기준: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자료 및 대학 학칙을 고려하며, 최종 전공 적합성 판단은 한국장학재단이 결정

※ 신청자의 복수전공·부전공은 인정 불가

□ **평가기준**: 가계소득(20점) + 성적(70점) + [1] 지역 정착 의지 및 산업 기여도(10점)

※ [붙임1.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 참조

※ 지역 정착 의지 및 산업 기여도 점수 기준: 해당 항목의 최종 부여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 점수가 10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2026년 푸른등대 2학기 기부장학금’과 본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2026년 푸른등대 2학기 기부장학금 합격자는 **심사단계에서 자동 탈락 처리됨**

※ 심사 기준일 기준 '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자(심사 기준일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10구간으로 간주)

1」 [지역 정착 의지 및 산업 기여도]

가산점 유형	세부내용	배점	증빙서류
지방 창업자	[1)]지방에 창업한 대학생	10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직무 역량 보유자	[2)]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 취득자	5점	자격증 사본

1) 창업한 기업의 소재지(본점 또는 사업장)가 지방(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창업자

2) 자격증 가산점*은 Q-NET(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상 '국가기술자격 > 직무 분야: 농림어업' 카테고리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 자격증만 인정하며, 그 외 자격증은 인정 불가

※ 각 항목별 점수는 중복 적용 불가
(예시: 자격증 3개 서류 제출 시 1개 자격증만 인정하여 **5점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성적 상위자(백분위 점수)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자 > 연소자

□ **제출서류(선택 제출)**: 지역 정착 의지 및 산업 기여도 증빙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창업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직무 역량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취득확인서

※ 신청자의 성명, 자격증명, 자격 취득일, 발급기관 및 자격번호(해당 시)가 확인되어야 함

□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운영 기준은 '20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함

□ 비고: 상기 명시된 기준 이외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의사에 따름

붙임 1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 · 성적 배점표

1. 가계소득 평가 배점표

평가 비율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20%	20	19.4	18.8	18.2	17.6	17	16.4	15.8	15.2	14.6	14

2. 성적 배점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 70%

[가계소득 및 성적 점수 산출 예시]
①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90점인 경우** **1) 평가기준: 가계소득(20점) + 성적(70점)** → 가계소득 환산 점수 18.2**점** + 성적 환산 점수 63**점**(90점 × 70%) = **81.2점**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붙임 | **20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6. 8.

한 국 장 학 재 단
인 재 육 성 지 원 부

'2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Ⅰ 사업 개요

1. 목적

□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안)

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 '26. 10. 20.(화)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26. 10. 22.(목) 9시 ~ 11. 12.(목) 18시
장학생 심사	'26. 11. 13.(금) ~ 11월 말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	'26. 11월 말

※ 심사 기준일: 2026. 11. 13.(금)

※ 상기 일정은 신청 현황 및 심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Ⅱ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6. 10. 22.(수) 9시 ~ '26. 11. 12.(목) 18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 일정은 신청 현황·심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동일 학기에 1개 기부자 유형만 신청 가능**

□ **기부자별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기부장학금 신청 기간 내 제출**

※ 재단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 등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제출, 기한 미준수 시 미제출로 간주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대학 관리자포털 시스템에서 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학사정보, 학적 상태, 학과명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기준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 진행**

□ **정보 제공 방식**

○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 학생 가구원의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등을 통해 산정된 **20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심사 기준일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10구간으로 간주**

※ 최초 재단 학자금 지원 시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기준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붙임3] 참고)**에 따라 **학생 본인이 신청한 기부자 유형**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점수 적용**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 'N' 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예외 처리

□ 성적

○ 성적은 **대학에서 산출·등록한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사용**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 학기로 적용**

○ **성적 배점기준([붙임3] 참고)**

- **성적 점수**: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X (기부자별 성적 배점 비율)

□ 장학생 심사

○ **적격 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성적 및 기부자별 심사**(자기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구 분		평가 항목
1차	1단계	○ 적격 여부 확인: 선발 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 평가
2차		○ 기부자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면접 심사 등 진행

* 선발 자격조건: 기부자별 신청 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 상태 등 심사

※ 장학금 신청자와 **가족관계**는 **'26-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 가족관계 판단 여부는 장학금 유형별 심사요건 및 기부자의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 계속장학생은 **계속 지원 조건**(성적 및 이수학점 등) **충족 여부 심사 후 선발**

- 계속 지원 조건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 중단**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 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4. 자기소개서, 면접 심사

□ 심사위원 위촉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

○ 심사위원은 기부자별 평가 기준을 근거로 위촉

○ 위촉 세부 계획은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 기능

○ 기부자별 사업 목적 및 평가 기준을 근거로 개별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 부여

- 심사 시 AI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심사 검증에 활용 또는 심사위원이 자기소개서 생성형 AI 사용 여부·표절률, 면접 분석 결과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게 제공

○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 점수로 대체

□ **심사위원 임기**

○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일까지로 함

□ **심사위원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 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자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지원유형에 한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 생활비 지원유형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하며, 등록금 지원유형은 타 등록금성 장학금 포함 당해 학기 총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수혜 가능

○ 동일 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 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수혜를 받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이 학자금 중복지원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가능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6.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등록금** 및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7.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질병·출산·어학연수·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자퇴·제적·타 대학 편입·재입학·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의 사유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 장학금 수혜 자격 포기 시 **[붙임6.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 단, 총 지원기간이 2년 이상인 장학금의 장학생이 휴학 시 장학금 최대 지원 기간 내에 한하여 반환 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반환 대상 금액 산정**

- 장학생이 학적 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3,000,000원 × 5/6 = 2,5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3,000,000원 × 2/3 = 2,0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3,000,000원 × 1/2 = 1,5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 일자 계산은 실제 학기 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이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5. 반환 예외 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반환 예외 신청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재단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 **장학금 환수**

○ **장학생의 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 이익 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 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 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 이익 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 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8. 기타 공통사항

□ **선발 관련 예외사항 처리**

○ **선발 관련 기준**이 **각 사업별 선발 계획**에서 **정한 사항**과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그 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부자와 협의하여 부서장 전결로 처리**

□ **계좌 관리**

○ **사업 전용계좌 신규 개설 또는 변경** 시 **재단으로 변경 요청 공문 발송**

- **대학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표지(첫 페이지) 사본**을 붙임으로 하여 발송

□ **발생 이자 처리**

○ 기부장학금 **대학 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 처리**

붙임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2. 신청인 동의서
3.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 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5.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6.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 끝.

붙임1 **2026년 2학기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2 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 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원리금 지원사업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에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 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인재육성지원 사업 관련 선발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자(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단, 2026.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26. 7. 1. 이후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 변경]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 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선발, 자기소개서 및 면접 평가 AI 검증,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써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본인 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원리금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인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개명이력, 주소이력, 주민등록번호정정.변경이력 등),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정보 등),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일반·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집합건물),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화재증명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학금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선택사항-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신청자 대상)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공 마이데이터)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공요구권)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제도 이용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공요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작성만으로 서류제출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 및 제공 요구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수집·이용
보유・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른 최신화 처리 및 가구원 제외심사,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6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활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제공(재단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국세청, 법무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 산림청, 외교부 ▸ 본인확인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근거한 본인확인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제공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정보(CI값)의 생성·조회·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른 최신화 처리 및 가구원 제외심사,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6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활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생년월일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연락처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묶음정보 서비스명 : 학자금 지원 서비스
- 묶음정보 이용목적 : 학자금 지원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본인정보 제공
- 제공 요청 유형 : 일회성 제공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10년
- 정기적 제공 요청 상세내용
 → 주기 : 해당 없음
 → 종료시점 : 해당 없음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요구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제공하신 본인정보는 제공요구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본인정보 제공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 (항목값)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의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세대주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록상태, 변동사유 (호주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발급일자) 년, 월, 일 (행정동명) 행정동명 (주민번호정정이력) 정정이전주민번호, 정정이후주민번호, 주민번호정정일자, 주민정정사유 (성명정정이력) 정정이전성명, 정정이후성명, 성명정정일자, 성명정정사유 (주소이력)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예(제공 요구합니다) □ 아니오(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정보주체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2 **2026년 2학기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될 경우(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에 반환)

나.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 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이주·북한배경)학생 멘토링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AI 교육지원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학자금 범위>

구분	내용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4.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재단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 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가'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5. '부정청구 등' 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5.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 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3 장학생 선발 가계소득·성적 배점표

※ 심사 시작일('26. 9. 11.(금)) 기준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을 시 학자금 지원구간 10구간으로 간주
※ 기부자별 가계소득 및 성적 평가 배점 기준은 각 기부자별 사업 계획서 참고

1. 가계소득 평가 배점표

평가 비율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70%	70	67.9	65.8	63.7	61.6	59.5	57.4	55.3	53.2	51.1	49
60%	60	58.2	56.4	54.6	52.8	51	49.2	47.4	45.6	43.8	42
50%	50	48.5	47	45.5	44	42.5	41	39.5	38	36.5	35
40%	40	38.8	37.6	36.4	35.2	34	32.8	31.6	30.4	29.2	28
30%	30	29.1	28.2	27.3	26.4	25.5	24.6	23.7	22.8	21.9	21
20%	20	19.4	18.8	18.2	17.6	17	16.4	15.8	15.2	14.6	14

2. 성적 배점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 (본인이 신청한 기부자별 성적 배점 비율)

[가계소득 및 성적 점수 산출 예시]

①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90점인 경우**

1) 'KOSAF기부펀드 일상회복' 장학금 신청 시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계소득 환산 점수 63.7**점** + 성적 환산 점수 27**점**(90점 × 30%) = **90.7점**

2) 'KOSAF기부펀드 지역 1차 산업' 장학금 신청 시 [평가기준: 가계소득(20점) + 성적(70점)]
→ 가계소득 환산 점수 18.2**점** + 성적 환산 점수 63**점**(90점 × 70%) = **81.2점**

붙임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이주·북한배경)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AI 교육지원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붙임5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 대학 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반환 대상 금액	원

반환 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 내용과 같이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반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반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재단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붙임 6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 (※ 대학은 재단으로 공문 제출)**

장학금 수혜자격 포기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수혜 대상 장학금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지원내용	원

수혜자격 포기 사유	*(사유 기재)*

상기 내용과 같이 장학금 수혜자격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